| 의안번호 | 제 | 호 |
|-------|-------------|-----------|
| 의결연월일 | 2019. (제 | · · 회) |

| 의 | |
|---|--|
| 결 | |
| 사 | |
| 항 |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
| 제출연월일 | 2019. 10. 7.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10.7.

제 출 자:고성군수

1. 제안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중인 경남신용 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고성군으로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출연의 법적 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경상남도 조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공공 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에 목적을 둠

4. 신용보증 지원방법

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5.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및 손실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추정) | '20년(추정) | |
|-------------------------|-----------------------------|----------------------------|----------------------------|----------------------------|---------------------------|--|
| 보증공급 | 8,491 | 9,388 | 10,201 | 10,000 | 10,000 | |
| 사고금액 | 313 | 342 | 448 | 527 | 607 | |
| 대위변제 (재보증 포함) | 168.5 | 209.7 | 310.0 | 364 | 410 | |
| 대손발생액 | △26.4 | △71.5 | △127.5 | △214 | △236 | |
| 출연금 (도/시군/기타) | 131.2 (37.6/14/79.6) | 94.6 (10/18.5/66.1) | 151.5 (10/25/116.5) | 173.5 (30/37/106.5) | 210 (50/51/109) | |

6. 우리군 출연 및 보증현황

(19.5.31기준, 단위 : 억원, 건)

| 구분 | 우리군 출연금 | | '18. 道정책자금 | | 총 보증잔액 | | 대위변제액 | | | | |
|----|---------|------|------------|-----|--------|------|-------|----|------|------|----|
| | '18년 | '19년 | '20년 | 이용액 | 건수 | '17년 | '18년 | 증감 | '17년 | '18년 | 증감 |
| 고성 | 1 | 1 | 1.5 | 3 | 15 | 137 | 159 | 22 | 4 | 4 | 0 |

 * 시·군 출연(억원): 창원(11)·김해(5.5)진주(4),양산(3.5),거제(3.5),통영(3)·사천(2.5)· 밀양(2)·함안(2.5)·거창(2.5)·창녕(1.5)·남해(1.5)·산청(1.5)함양(1) 하동(1.5)·합천(1.5)·의령(1)

7. 2020년도 출연금 계획: 금150,000천원

※ 2019년도 대비 50,000천원 증가

8. 관련 법규 발췌문 : 붙임 참조

관련 법규 발췌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 (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 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3. 기업의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 3. 금융기관의 출연금
- 4. 기업의 출연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